

석사학위논문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김 명 호

2004년 12월

석사학위논문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고 성 호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회계학전공

김 명 호

2004년 12월

소득세법상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高 成 孝

金 明 鎬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4年 12月 日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金明鎬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

委 員 :

委 員 :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04年 12月 日

《 목 차 》

第1章 序論.....	1
第1節 研究目的.....	1
第2節 研究方法과 論文의 構成.....	3
第2章 推計課稅制度의 理論的 背景과 先行研究의 檢討.....	4
第1節 推計課稅制度의 概要.....	4
1. 國稅賦課의 原則.....	4
2. 推計課稅制度의 沿革.....	6
3. 推計課稅制度에 대한 現行 稅法의 規定.....	7
4. 우리나라의 推計課稅制度의 運營現況分析.....	12
第2節 推計課稅制度의 類型.....	16
1. 標準所得率制度.....	16
2. 基準經費率制度.....	18
3. 收入金額推計方法.....	21
4. 外國의 類型.....	23
第3節 先行研究의 檢討.....	28

第3章 推計課稅制度의 評價 및 改善方案.....	32
第1節 標準所得率制度.....	32
1. 所得金額計算方法 및 內容.....	32
2. 標準所得率制度의 長·短點.....	40
第2節 基準經費率制度.....	47
1. 所得金額計算方法 및 內容.....	47
3. 基準經費率制度의 長短點.....	58
第3節 推計課稅制度의 比較 및 評價.....	64
1. 標準所得率制度와 基準經費率制度의 比較.....	64
2. 外國 推計課稅制度와의 比較.....	65
第4節 改善方案.....	66
第4章 結論.....	69



《 표 목 차 》

<표2-1>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현황.....	13
<표2-2> 1998년 귀속 수입금액 계급별 신고유형.....	16
<표3-1>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현황(2001년 귀속)...	41
<표3-2>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 현황.....	45
<표3-3>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 조정 현황.....	46
<표3-4> 매입비용, 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57
<표3-5>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비교	64

第1章 序 論

第1節 研究目的

所得稅(income tax)란 個人이 얻은 所得에 대하여 賦課하는 租稅로서, 法人에 대한 所得稅와 區別하기 위하여 個人所得稅(individual income tax)라고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체계에서는 법인에 대한 소득세는 法人稅法으로, 그리고 개인에 대한 소득세의 규정은 所得稅法으로 분리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각 개인의 擔稅能力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所得”을 과세물건으로 하면서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고 累進稅率을 적용하기 때문에 應能負擔의 원칙을 실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세제도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1949년 7월 15일 소득세법이 제정·공포되어 1975년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종합과세제도로 운영하다가, 1975년부터 종합과세제도로 전환되었으며, 그 후 1994년 12월 22일, 소득세법 전면 개정으로 1996년(1995년 귀속분)부터 自進申告 納稅制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列舉主義 課稅方式에 따라 과세한다. 列舉主義란 법률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독일·영국 및 우리나라 등이 이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열거주의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규정하는 경우 법률에서 한정·열거하지 않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綜合所得, 退職所得, 讓渡所得, 山林所得으로 분류하고 다시 綜合所得은 利子·配當所得, 不動產賃貸所得, 事業所得, 勤勞所得, 一時財産所得, 年金所得, 其他所得으로 재분류한다.

이들 소득 중 不動產賃貸所得, 事業所得, 山林所得이 있는 자를 事業者라고 하는데 이들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複式簿記에 의하여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즉 사업자의 소득세는 複式簿記에 의해 기록된 根據에 의해 과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 부

득이 根據課稅原則의 例外로서 과세소득을 확정하기 위한 방법을 소득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推計課稅制度라 부른다.

推計課稅制度는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경우 비치 기록된 근거서류에 의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미기장 사업자의 경우 근거서류의 미비를 이유로 과세권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그 이론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그 동안 사업자의 소득세 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標準所得率이었다. 즉 근거과세원칙의 부득이한 예외 규정이 오히려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리는 오류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 즉 수입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률을 곱해 綜合所得金額을 산출하는 방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소득세 산정방법으로 오도되어 온 것이 사실이었다. 영세사업자에게 간편하게 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행정 능률을 제고하는 본래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표준소득률 제도는 무기장사업자는 물론 기장사업자들에게도 신고 소득금액의 上限으로 오용됨으로써 應能負擔의 原則이라는 소득세제의 대명제에 심각한 피해를 끼침은 물론 根據課稅制度의 確立이라는 세정 목표의 달성에 중대한 걸림돌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역기능에 따라 그간 시민단체는 물론 학자 등 세무전문가 집단에서 여러 차례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론이 크게 제기되어왔다.

이에 따라 2002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는 기존의 표준소득률제도에 대체하는 基準經費率制度가 도입되었다. 약 50년 가까이 적용되어온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기회가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와 함께 도입된 기준경비율의 적용에 따른 혼란과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의 우려에 따라 2004년 귀속분까지는 소득금액의 상한이라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아직 사업자등이 크게 느끼지 못하는 불안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5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표준소득률제도의 내용과 그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도입된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배경과 적용방법 및 그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보완 과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第2節 研究方法과 論文의 構成

본 연구는 표준소득률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배경을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의 내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관련된 국내외 문헌, 선행연구 논문을 분석, 검토하고 그 외 국세청 통계자료 등 문헌조사 연구방법에 의해 연구하였다.

제2장에서는 추계과세제도의 개요 및 유형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결과 및 논쟁점들을 고찰하였다. 근거과세원칙의 예외적 제도로 시행되어 온 추계과세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추계과세제도에 대한 현행 세법의 규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추계과세제도의 여러 유형들을 고찰하고 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방향 및 범위를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 제도의 내용 및 장단점을 평가분석하고 외국의 추계과세제도와 비교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미래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第2章 推計課稅制度의 理論的 背景과 先行研究의 檢討

第1節 推計課稅制度의 概要

1. 國稅賦課의 原則

國稅基本法에서는 國稅賦課의 原則으로서 ① 實質課稅의 原則, ② 信義誠實의 原則, ③ 根據課稅의 原則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國稅의 賦課라 함은 課稅年度가 종료되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國稅賦課의 原則은 이러한 납세의무의 확정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모두 명문적인 규정 이전에 租稅法에 본래부터 당연히 내재하는 條理이므로 이 규정들은 創設的인 것이 아니라 宣言的인 것이라 할 수 있다. 國稅基本法은 이를 재삼 확인하고 강조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확정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다.¹⁾

이 원칙들의 의의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實質課稅의 原則’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서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실질과 괴리된 법 형식을 통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負擔能力에 따른 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租稅平等主義를 보다 구체화시킨 원칙으로 이해되고 있다. 國稅基本法에서는 歸屬에 관한 實質主義와 去來內容에 관한 實質主義로 규정하고 있다.

‘信義誠實의 原則’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國基法 15)고 규정한다. 이것을 ‘信義則’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칙은 본래 민법상 채권, 채무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원칙으로서 발달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모든 법 분야의 근본적 원리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1) 세법개론, 임상엽, 02 상경사

‘根據課稅의 原則’이란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하여 납세의무를 확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취지는 불충분한 과세를 방지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데 있다. 따라서 推計課稅制度는 國稅賦課의 原則 중 根據課稅의 原則에 대해 예외적 규정이다. 즉 앞서 서술한대로 납세의무를 확정시킬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과세의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實地調查 決定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해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명자료에 의하여야 한다.(國基法 16①) 이는 實質調查 決定이 원칙적인 결정 방법임을 가리키는 것이다.

②. 決定 根據의 附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도 ‘그 부분에 限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國基法 16②,③)

③. 決定書의 閱覽, 謄抄權

행정기관의 長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초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상 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구는 구술에 의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의 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열람 또는 등초한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國基法 16④,⑤)

2. 推計課稅制度의 沿革

우리나라의 標準所得率制度는 1954년 12월에 처음으로 名文으로 규정되었고, 이에 따라 1955년 5월에 최초의 所得標準率이 제정되었으며 1992년 12월에 소득추계방법을 다양화하면서 그 명칭도 標準所得率로 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²⁾

가. 國稅廳 發足 以前(1955年 ~ 1965年)

우리나라 최초의 所得標準率表는 1955년 5월 財務部 司稅局에 의하여 442개 업종의 所得標準率을 제정. 시행하였다. 이때의 所得標準率은 不動產所得과 事業所得에 적용하였으며 1959년까지는 2년에 한번, 1959년 이후 1962년까지는 연1회, 1963년~1965년까지는 매년 제 1기분, 제 2기분으로 나누어 연 2회 제정. 시행되었다.

1955년 최초의 所得標準率表는 먼저 不動產所得과 事業所得으로 나누고 不動產所得은 4개 종목으로, 事業所得은 營業所得 · 原始 産業所得 · 서업(서비스업)소득으로 구분하여 총 442개 업종의 所得標準率을 제정하였다.

나. 國稅廳 發足 以後(1966年 ~ 1990年)

1966년부터는 각 지방 국세청에서도 기준 업체를 선정하여 실소득률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각종 경제 지표를 반영하고 경제 단체와 동업자조합의 자문을 받아 6개월마다 所得標準率을 제정하였다.

1967년에는 처음으로 差等率을 도입하였고 법적 안전성을 위하여 대외 비로 관리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에 관계 공무원의 처벌 규정을 명시하였다.

1975년에는 綜合所得稅制의 전면 실시와 더불어 所得標準率審議會를 국세청에 설치하여 과세기준으로서의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동안 비공개로 운영해오던 所得標準率을 1976년부터 공개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납세자의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영세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 공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2) 국세청 [국세청사 30년] 1996

세무행정 선진화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많았다.

1990년에는 그 동안 실시하여 오던 5단계 수입금액 비례 차등율제도를 3단계로 간소화하여 差等率을 낮은 差等率, 輕減率, 加算率로 변경하였다.

다. 1991년 이후 2001년까지

1992년에 所得標準率을 標準所得率로 명칭을 개정하고 업종분류도 대폭 개선(1,699종목)하였으며, 1994년에는 農·畜·水産業 등 106개 종목을 최고 20%까지 인하하고 호황업종, 전문직, 룬싸롱, 임대업 등을 5~20% 인상하였다.

1995년에는 변호사, 모델 등 고소득 50여개 업종을 최고 30%까지 인상한 반면 소득세가 申告納稅制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標準所得率을 인하하였다.

3. 推計課稅制度에 대한 現行 稅法의 規定

1) 決定 方法의 類型 (實額課稅方法과 推計課稅方法)

課稅標準을 산정하는 방법은 그 산정의 근거로 한 증거 혹은 자료가 직접적인 것인가 아니면 간접적인 것인지, 즉 直接證據인지 아니면 間接證據인지에 따라서 實額課稅方法과 推計課稅方法으로 구분할 수 있다.

實額課稅方法이란 장부 및 이에 관련되는 증빙서류와 같은 直接證據를 바탕으로 課稅標準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조세법상 應能負擔의 原則과 根據課稅의 原則은 원칙적으로 實額課稅方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할 것을 요구한다. 實額課稅方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의무자 스스로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申告納稅制度和 친숙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귀속분부터 종전의 政府賦課課稅制度에서 自進申告納稅制度로 이행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의 결정방법은 實額課稅方法이 원칙이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直接證據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直接證據가 허위인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에 대한 과세표준의 산정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과세를 포기해야 하느냐가 문제이다.

이 경우에도 과세를 포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불성실한

납세의무자는 과세에서 제외됨으로써 오히려 우대되고 성실한 납세의무자만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불리하게 취급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間接的인 證據에 바탕을 둔 推計方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直接證據를 갖추고 있지 않거나 납세의무자가 直接證據라고 제시하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直接的인 證據에 의존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 間接證據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정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다. 즉 推計方法은 實額課稅方法에 의한 과세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例外的인 課稅標準의 認定方法인 것이다.

2) 實額方法에 의한 決定

가. 要件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는 경우로서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所法 80③)

과세관청은 법에서 정한 경우(國基法 81의 5②)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推定한다.(國基法 81의 5①)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시하는 장부와 이에 관계있는 증빙자료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임을 이유로 推計課稅를 하는 경우에는 그 推計課稅의 要件을 이루는 근거 사실에 관하여 立證責任을 지는 것이다.

나. 決定方法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증빙서류 등과 같은 直接證據를 근거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한다. 이와 같은 實額方法은 課稅標準 確定申告書 및 그 添附書類에 의하여 實地調査에 의하여 행한다.(所令 142①)

實額方法중에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중심으로 하여 확정하는 방법을 書面調査決定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內部調査(office audit)의 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하여 實地調査 決定은 주로 거주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에서 당해 거주자가 비치·기장하고 있는 장부, 증빙서류 등과 증거자료의 확인을 통하여 행하게 된다. 즉 實地調査는 주로 現場調査(field audit)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

다.

3) 推計方法에 의한 決定

가. 推計課稅의 要件

① 課稅關稅이 直接資料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間接資料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하는 방법이 推計方法이다.

所得稅의 理想이 直接資料를 근거로 소득의 실액을 파악하는 데 있으므로 實額方法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推計方法에 의한 決定은 직접증거를 입수할 수 없거나 입수하더라도 그 증거가 현저히 부정확하거나 신뢰성이 결여되어 추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즉 推計方法에 의한 決定의 要件은 다음과 같은 명백한 객관적인 사유로 實額方法에 의한 決定을 할 수 없는 때이다.(所法 80③ 但書, 所令 143

①)

ㄱ. 課稅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ㄴ.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ㄷ.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위에서 추계과세의 요건을 크게 課稅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와, 課稅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대별할 수 있다.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와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전력 사용량, 기타 조업 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란 결국 課稅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의 例示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3) 김완석, “추계과세방법과 그 합리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 제9권. 한국조세학회, 1995

② 推計方法에 의한 決定은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의 해석은 엄격히 하여야 한다. 推計課稅의 必要性에 관한 立證責任은 課稅官廳에게 있다.(大法院, 1983.11.22 83누444)

③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위법성이 다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處分時와 判決時 중 어느 시점의 사실 및 법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違法性을 판단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大法院은 설사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取消審判 또는 訴訟에 있어서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나타났을 경우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實額調査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判決時說을 지지하고 있다.(大法院 1986.12.9 86누516)

나. 決定方法

추계방법에 의한 결정의 요건이 충족되어 推計方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실액에 근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선택되지 않으면 안 된다. 推計方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推計方法이 客觀性을 가져야 하고 둘째, 推計의 기초가 된 사실이 정확하여야 하며 셋째, 선정된 推計方法이 특정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에 있어서 구체적 개별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⁴⁾

합리성, 타당성이 결여된 推計方法에 의하여 행해진 과세처분은 違法이다. 推計方法의 合理性과 妥當性에 관한 立證責任이 課稅官廳에게 있음은 설명을 요하지 아니한다.(大法院 1984.4.10 84누48)

ㄱ. 所得金額의 推計方法 (2001년도 귀속분까지)

推計方法에 의한 綜合所得課稅標準은 다음에 제기하는 推計方法에 의하여 산정한 所得金額에서 綜合所得控除(人的控除와 特別控除)를 하여 산정한다.(舊所令 143② 및③)

- i) 收入金額에 標準所得率을 곱한 金額으로 하는 方法
- ii) 標準所得率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산정하는 방법. 다만, 동

4) 이태노, [조세법개론] 조세통람사, 1995

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확정 신고 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課稅標準 確定 申告書 및 그 添附書類에 의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所得率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iii)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법

위의 추계방법을 정하고 있는 舊 所得稅法 施行令 제 143조 제 2항이 추계방법을 例示한 규정인지, 아니면 추계방법을 制限的으로 列舉한 규정인지를 둘러싸고 例示說과 制限說이 대립했었다.

추계방법도 추계요건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制限說이 마땅할 것이다. 大法院은 制限說의 입장에서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추계방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자의적인 추계에 해당하여 違法”이라고 判示한 바 있다. (大法院 1985.10.8 85누426외)

ㄴ. 所得金額의 推計方法 (2002년 귀속분부터)

2002.1.1 이후 귀속분에 대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所令 143③) 이때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總收入金額에 산입할 充當金, 準備金 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充當金 및 準備金 등을 가산한다.(所令143⑦)

i) 수입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없는 것으로 본다.

- 買入費用(事業用 固定資産의 買入費用 제외)과 事業用 固定資産에 대한 賃借料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종업원의 給與와 賃金 및 退職給與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수입금액에 基準經費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text{推計所得金額} = \text{收入金額} - (\text{主要經費} + \text{基準經費})$$

$$\text{主要經費} = \text{買入費用} + \text{賃借料} + \text{人件費}$$

$$\text{基準經費} = \text{收入金額} * \text{基準經費率}$$

다만 基準經費率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單純經費率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1.4배를 초과하는 경우 單純經費率에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基準經費率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한다.(2004.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ii)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單純經費率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한한다.)

$$\text{推計所得金額} = \text{收入金額} * (1 - \text{單純經費率})$$

* 基準經費率 등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基準經費率 또는 單純經費率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課稅標準 確定 申告 後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課稅標準 確定 申告書 및 그 添附書類에 의하고 課稅標準 確定 申告 前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所得率에 의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 기타 國稅廳長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4. 우리나라의 推計課稅制度의 운영현황분석

(1) 事業者의 綜合所得稅 申告 類型別 現況 分析

먼저 1997년도 이후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현황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표2-1> 事業者의 綜合所得稅 申告類型別 現況

(1997귀속년도분)

單位：名, 百萬元

신고유형	구 분	신 고 인 원		결 정 세 액	
			구 성 비		구 성 비
합	계	1,274,659	100.0	3,689,842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504,933	39.6	2,771,130	75.1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61,544	28.4	2,579,531	69.9
자기조정계산서첨부		44,856	3.5	96,985	2.6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98,533	7.7	94,614	2.6
추 계 신 고		769,726	60.4	918,712	24.9

(1998 귀속년도분)

單位：名, 百萬元

신고유형	구 분	신 고 인 원		결 정 세 액	
			구 성 비		구 성 비
합	계	1,212,995	100.0	2,858,254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495,045	40.8	2,166,580	75.8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32,179	27.4	1,990,622	69.6
자기조정계산서첨부		53,342	4.4	85,239	3.0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109,524	9.0	90,719	3.2
추 계 신 고		717,950	59.2	691,674	24.2

(1999 귀속년도분)

單位：名, 百萬元

신고유형	구 분	신 고 인 원		결 정 세 액	
			구 성 비		구 성 비
합	계	1,342,153	100.0	3,557,819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52,904	42.7	2,516,715	70.7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41,092	25.4	2,260,596	63.5
자기조정계산서첨부		56,678	4.2	99,473	2.8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175,134	13.1	156,646	4.4
추 계 신 고		748,762	55.8	797,595	22.4

(2000 귀속년도분)

單位：名, 百萬元

구 분 신고유형	신 고 인 원		결 정 세 액	
		구 성 비		구 성 비
합 계	1,616,244	100.0	4,803,125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679,536	42.0	3,238,625	67.4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69,258	22.8	2,856,232	59.4
자기조정계산서첨부	55,295	3.4	119,977	2.5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254,983	15.8	262,415	5.5
추 계 신 고	856,124	53.0	566,044	20.8

(2001 귀속년도분)

單位：名, 百萬元

구 분 신고유형	신 고 인 원		결 정 세 액	
		구 성 비		구 성 비
합 계	1,782,369	100.0	5,537,259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790,224	44.3	3,908,692	70.6
외부조정계산서첨부	409,631	23.0	3,424,775	61.9
자기조정계산서첨부	63,592	3.5	144,647	2.6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317,001	17.8	339,270	6.1
추 계 신 고	950,665	53.4	1,066,551	19.3

(2002 귀속년도분)

單位：名, 百萬元

구 분 신고유형	신 고 인 원		결 정 세 액	
		구 성 비		구 성 비
합 계	2,010,363	100.0	5,745,486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918,803	45.7	4,024,494	70.0
외부조정계산서첨부	462,719	23.0	3,535,608	61.5
자기조정계산서첨부	81,652	4.1	156,246	2.7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374,432	18.6	332,640	5.8
추 계 신 고	1,023,137	50.9	1,039,498	18.1

(자료출처: 국세청 통계자료. www.nts.go.kr)

먼저 申告納稅制度를 도입한지 어느 정도 지난 1997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記帳申告 比率은 1997년 31.9%, 1998년 31.8%, 1999년 29.6%, 2000년 26.2%, 2001년 26.5%, 2002년 27.5%에 불과하여 오히려 감소내지는 정체의 상태를 보이고 있다.(外部 調整 計算書 첨부자와 自己 調整 計算書 첨부자 포함)

반면 推計 申告者의 비율은 1997년 60.4%, 1998년 59.2%, 1999년 55.8%, 2000년 53%, 2001년 53.4% 2002년 50.9%로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이유는 기장에 의한 신고자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簡便帳簿 所得金額 計算書 첨부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事業規模別 所得稅 申告 現況分析

위의 표에서 보면 推計申告者의 인원 비율이 60.4%에서 적게는 50.9%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지만 이들 推計申告者의 決定稅額은 전체의 20%내외의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推計申告者의 대부분은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봐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래의 표에서도 하나의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수입금액이 複式簿記義務者인 경우에도(업종별로 다르지만, 전년도 수입 금액 기준 3억원이상이면 複式簿記義務者임)推計申告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할 경우 無申告 加算稅(결정세액의 20%)의 부과 및 과거 표준소득률 적용시 가산율(10%)의 적용 등 불이익이 많았다. 그러함에도 굳이 추계신고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가산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적용한 推計所得金額보다 많아 세부담 조절의 목적으로 추계신고의 방법을 선택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추계신고를 하면 稅務調査의 부담이 기장신고자보다 덜 하고 설령 稅務調査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정세액의 부담이 기장신고의 경우보다 작기 때문이다. 즉 기장신고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누락이 발견될 때 對應原價가 없으면 그 누락된 수입금액 전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지만, 추계신고자의 경우 그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만큼만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정도의 차이가 크다고 할 것이다.

<표2-2> 1998年 歸屬 收入金額 階級別 申告類型

(單位：천명, 천원)

신고구분 수입금액 계급별	계	기장신고자		간이소득금액 계산서첨부자	추계신고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7,500만원 미만	657	67	10.4	53	537	81.7
7,500만원~1억5,000만원	245	76	31.0	36	133	54.3
1억5,000만원~3억원	158	101	63.9	17	40	25.3
3억원 이상	153	141	92.2	4	8	5.2
계	1,213	385	31.8	110	718	59.2

第2節 推計課稅制度의 類型

1. 標準所得率制度



(1) 意義

標準所得率은 ‘收入金額에서 所得稅를 課稅할 수 있는 所得金額이 차지하는 比率’이라고 할 수 있으며, 國稅廳長이 平均적 企業에 대하여 업종과 企業의 特性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參작하여 所得標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制定하였다.

표준소득율은 1955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47년간 유지되어 오면서 소득세의 주된 과세방식이 되었다. 1995년에 소득세의 과세제도가 政府賦課 課稅制度에서 自己賦課制度인 申告納稅制度로의 선진적 이행이 되었으나, 이에 걸맞는 기장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소득세 행정이 標準所得率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실정이었고 自己賦課制度인 申告納稅制度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賦課課稅制度의 기준인 標準所得率制度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標準所得率制度는 尙장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에게 신고 편의를 제공

하고 많은 수의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 간편하게 소득세를 계산·납부하게 하는 효과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순기능적인 요소도 있었다.

標準所得率은 우리나라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의 輕重을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第 2의 稅率”이나 다름이 없었고, 이런 점에서 형식상의 세율보다 훨씬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었다.

(2) 法的根據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정확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게 된다.(所得稅法 施行令 제143조①)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방법에는 標準所得率을 이용하는 방법,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는 방법 및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舊 所得稅法 施行令 제143조③) 대부분 標準所得率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였다.

(3) 制定方法

標準所得率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所得 標準 審議會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所得率이었다.(舊 所得稅法 施行令 45조 ①)

所得標準審議會는 국세청에 두었고 위원장은 國稅廳 次長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 대학,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2. 基準經費率制度

基準經費率制度란 사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主要經費는 납세자가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推計經費인 基準經費率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主要經費는 買入經費(固定資産 買入費用을 제외한 商品, 原·副材料費 등), 人件費, 賃借料 등 사업자라면 마땅히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또한 경비의 지출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를 말한다.

한편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과 같은 구조인 單純經費率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基準經費率은 기장사업자의 損益計算書상 비용의 비율 중 主要經費(買入費用, 賃借料, 人件費)의 비율을 제외한 기타 경비의 비율을 기초로 업종별로 제정한다.

(1) 基準經費率制度의 導入背景

사업자는 자기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1955년부터 추계과세제도인 標準所得率制度를 도입하여 운용하여 왔다.

그 동안 標準所得率制度는 간편하게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에게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다수의 무기장 사업자의 납세의무를 一時에 이행시킬 수 있게 하여 行政能率을 제고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도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平均的인 所得率(標準所得率)에 의해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세부담이 불공평해지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소득세도 1995년부터 납세자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申告納稅制度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自營事業者의 소득 파악과 관련하여 학계, 시민단체, 재야 조세전문가들은 標準所得率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는 등 標準所得率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日本은 1947년 소득세를 申告納稅制度로 전환하고

1950년 靑色申告制度를 도입하면서 標準所得率制度를 사실상 폐지하였다.

그러나 근 50년 가까이 사용해 온 標準所得率을 一時에 폐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 사업자의 약 60%에 달하는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 불편과 행정부담 등 큰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基準經費率制度를 도입하여 2002귀속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2) 基準經費率制度의 概念

基準經費率制度란 사업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수취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인정하고, 나머지 비용은 推計經費인 基準經費率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여기에서 主要經費는 買入經費(固定資産 買入費用을 제외한 商品, 原·副材料費 등), 人件費, 賃借料 등 사업자라면 마땅히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또한 경비의 지출 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가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는 종전과 같은 구조인 單純經費率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基準經費率은 記帳事業者의 損益計算書上 비용의 비율 중 主要經費(買入費用, 賃借料, 人件費)의 비율을 제외한 기타 경비의 비율을 기초로 업종별로 제정한다.

標準所得率을 폐지하게 되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고 기장한 소득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 신고 사업자 중 과반이 넘는 수의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고 일시에 標準所得率을 폐지하고 모두 기장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므로 標準所得率의 폐지 대안으로 基準經費率制度를 도입하게 되었다.

基準經費率制度 하에서 소득금액은 만약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요경비 관련 서류를 얼마나 어떻게 수취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게 된다. 標準所得率制度에서는 동일업종의 동일한 수입금액은 동일한 소득금액을 도출시켰던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인데 이것이 基準經費率制度和 標準所得率制度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해 보자.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사업자 B가 있다. 두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1억원으로 동일하고 標準所得率을 10%, 基準經費率을 20%라 가정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해 標準所得率 적용상 차등을 적용은 없다고 하자.

- 標準所得率制度에서의 所得金額

A : 1억원 × 10% = 1천만원

B : 1억원 × 10% = 1천만원

- 基準 經費率 制度下的 所得金額은 主要經費의 정규 증빙을 더 많이 수취한 A의 所得金額이 훨씬 적게 된다.

		A	B
① 수입금액		100,000,000	100,000,000
주요경비 (정규증빙 수취금액)	인건비	10,000,000	10,000,000
	지급입차료	7,000,000	3,000,000
	매입비용	30,000,000	15,000,000
	② 소계	47,000,000	28,000,000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③ 기준경비율	20%	20%
	④ 금액(①×③)	20,000,000	20,000,000
⑤ 필요경비 합계(② + ④)		67,000,000	48,000,000
⑥ 소득금액(① +⑤)		33,000,000	52,000,000

(3) 基準經費率과 單純經費率의 決定

基準經費率과 單純經費率은 國稅廳長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基準經費率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결정한 經費率이다.

基準經費率 審議會는 國稅廳에 두는데, 그 委員長은 國稅廳 次長이 되고, 委員은 경상계 대학, 학술연구단체,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國稅廳長이 위촉하는 자 11人和 財政經濟部에서 소득세 업무

와 물가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각 1인 및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國稅廳長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基準經費率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3. 收入金額推計方法

所得稅法에서는 所得金額에 대한 추계결정방법 외에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결정방법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자.(所得稅法 施行令 144條)

(1)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記帳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記帳에 의하여 調査決定한 同一 業況의 다른 事業者의 收入金額을 참작하여 計算하는 方法

나. 國稅廳長이 事業의 種類, 地域 등을 감안하여 事業과 관련된 人的·物的施設(從業員·客室·事業場·車輛·水道·電氣 등)의 數量 또는 價額과 賣出額의 關係를 정한 營業效率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方法

다. 國稅廳長이 업종별로 투입원자재에 대하여 조사한 生産收率을 적용하여 계산한 生産량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매출한 수량의 時價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方法

라. 國稅廳長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方法

① 生産에 투입되는 原·副材料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生産량과의 關係를 정한 原單位 投入量

② 人件費·賃借料·材料費·수도광열비 기타 營業費用 중에서 일부 또

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費用關係比率

③ 일정기간 동안의 平均在庫金額과 賣出額 또는 賣出原價와의 관계를 정한 商品回轉率

④ 일정기간 동안의 賣出額과 賣出總利益의 비율을 정한 賣買總利益率

⑤ 일정기간 동안의 賣出額과 附加價值額의 비율을 정한 附加價值率

마. 추계결정·경정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위 “나”내지 “라”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國稅廳長이 정하는 立會調查基準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一時財産所得에 대한 收入金額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收入金額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 의한다.

가. 營業權(店鋪賃借權을 제외한다)은 相續稅 및 贈與稅法 施行令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나. 店鋪賃借權은 다음 ①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에서 ②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差減한 金額

① 讓渡時의 賃貸保證金相當額 + 당해 資產을 讓渡하는 事業者의 營業權評價額

② 取得時의 賃貸保證金相當額 + {가)목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取得時의 賃貸保證金相當額} × 1/2

다. 法 제20조의 2 제1항의 資產이나 權利(營業權 및 店鋪賃借權을 제외한다)는 相續稅 및 贈與稅法 施行令 제 59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評價한 金額

(3) 위(1)의 규정에 의한 收入金額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한 것으로 한다.

가. 당해 事業과 關聯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로부터 지급받은 補助金 또는 獎勵金

나. 당해 事業과 關聯하여 同業者團體 또는 去來處로부터 지급받은 補

助金 또는 獎勵金

다. 附加價値稅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信用卡出賣傳票를 交付함으로써 공제받은 附加價値稅額

(4) 위 (1) 내지 위 (3)의 규정에 의하여 收入金額을 推計決定 또는 更正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비치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實地調査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4. 外國의 유형

현재 선진국의 경우 모든 사업자에게 帳簿의 記帳義務를 부여하고 있다. 만약 장부기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基準經費率制度의 경우처럼 일률적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지만 각 나라의 경우에는 그 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推計課稅方式을 채택하고 있다.

(1) 美國^{5),6)}



美國의 경우 記帳 義務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하여 國稅廳長이 소득을 명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된다.

美國은 1918년 추계에 의한 과세가 인정되면서 납세의무자가 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기록한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혹은 부정확한 경우에 과세소득은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美國의 연방대법원은 납세자의 회계 장부의 개별항목에 관한 오류를 검증하지 않더라도 純資産法에 의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을 그 증거로 하여 당해 장부의 기록이 부적정함을 인정하고 그 純資産法에 의해 산정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한 적이 있다.

5) 김원석, [추계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35호, 한국세무사회

6) 이철인, [무기장자의 합리적 소득추계방법] 한국조세연구원, 1999

美國 내국세법 제 446조에 會計의 方法(method of accounting)이란 것이 있다. 이것은 과세소득에 대한 추계의 방법은 아니며, 다만 과세소득으로 전환되는 기초 자료나 과세관청이 신고 누락된 소득을 추계 과세하는 방법에서 會計原則을 인정하는 것이다.

추계과세 방법에는 純資産法, 現金 支出法, 銀行 預金法 및 기타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가. 純資産法(Net worth method)

이는 납세자의 期初의 純資産과 期末의 純資産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기간중의 자산증가액에 생활비 및 공제할 수 없는 비용을 가산하고 非課稅所得을 제외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純資産 및 消費額法(Net worth and expenditure method)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금액의 추계방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나. 現金支出法 혹은 消費額法(Cash expenditure method)

이는 純資産法과 별개의 방법이 아니라 純資産法이 변형된 것으로서, 특히 消費額에 착안하여 과세소득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즉 과세기간중의 자금 사용액에서 원천이 밝혀진 可用資金을 차감하고 일정 조정을 거쳐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을 초과하는 지출액은 그 납세의무자가 적절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면 근본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이다.

즉 납세의무자의 생활비 지출, 투자 및 기타 항목을 가산하고 신고한 소득을 차감한 잔액을 申告漏落 所得으로 간주한다.

이 법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고소득의 초과액 중 어떤 지출액이 期初資産, 借入金 · 贈與 및 相續 등과 같은 비과세 수입에 원천을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 銀行預金法(Bank deposit method)

과세기간중의 은행예금의 총액으로부터 사업의 總收入金額을 推計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을 가득하는 사업 혹은 직업을 영위하면서 장부 또는 기록에 반영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銀行預金を 할 경

우 특히 유효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라. 比率法(Percentage markups and ratios method)

賣出額 및 買入額 등을 근거로 하여 동업자 내지 동종업종의 비율 등에 의하여 所得金額 및 總收入金額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2) 日本^{7),8)}

日本은 우리나라의 추계과세제도와 유사하며 所得稅 및 法人稅法에서 申告納稅制度를 채택하고 있으며 青色申告者에 대하여는 추계과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青色申告者에 대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계과세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所得稅法 제 156조에서 ‘稅務署長은 居住者에 관계되는 所得稅에 한하여 그 자의 財産 또는 債務의 增減狀況, 收入 또는 支出 狀況이나 生産量, 販賣量, 기타의 取扱量, 従業員 數 기타 事業의 規模에 의하여 그 자의 각 년도의 각종 所得金額 또는 損失金額을 推計하여 所得稅를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日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계과세방법을 살펴보자.

가. 純資産 增加法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의 期初와 期末의 純資産을 비교함으로써 그 增減額을 계산하고, 그 增減額에서 과세기간 중의 生計費와 所得稅, 住民稅 등이 支出金額(法人의 경우에는 事業年度 중의 資本의 增減을 제외하고 利益處分으로서의 社外流出額과 法人稅, 住民稅 등의 支出金額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所得金額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계산법은 소득금액의 산정에 필요한 직접자료가 전혀 없거나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전혀 없는 것과 다를 바 없을 때에만 인정되는 방법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자료가 일부라도 존재하고 있고, 그 일부의 직접자료를 기초로 하여

7) 김원석, [추계과세방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제35호

8) 이철인, [무기장자의 합리적 소득추계방법] 한국조세연구원 1999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하여야 할 추계방법이다.

나. 消費額法

課稅期間 내에 있어서 納稅義務者가 현실로 부담한 소득의 소비에 해당하는 生活費나 所得稅, 住民稅 등의 支出金額을 기초로 하여 所得金額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는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의 생계비는 타인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는 한 그 소득에 의해 꾸려져 간다는 전제아래 消費支出의 金額으로부터 所得金額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은 純資産增減法이나 다른 推計方法과 병행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 銀行去來額法

이는 납세자가 수익 및 지출을 모두 銀行去來에 의하여 入金 또는 支給하는 경우라든가 몰래 비밀의 預金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중의 銀行去來를 기초로 하여 賣出額, 買入額, 經費 및 所得金額을 推計하는 방법이다. 다만, 이 방법에 대하여 所得金額을 推計하는 경우 所得金額을 구성하지 않는 預入額 및 引出額 등을 賣出額, 買入額 또는 經費에서 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와 같은 공제가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여 추계방법의 합리성이 인정된다.

라. 效率法

납세의무자에게 所得金額을 발생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는 生産量, 수확량, 販賣量, 營業日數, 稼動 人員數, 原材料의 使用量, 電氣 · 水道 · 石油 · 消耗品 등의 消費量 등의 計算單位 1單位當의 收益率, 差益率, 賣出率, 回傳率, 生産率, 稼動率 등을 算定하고 그 과세기간의 납세의무자의 생산량 등에 단위당 효율을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추계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1單位當 效率은 납세의무자 본인의 것인 경우와 당해 납세의무자의 동업자의 것인 경우가 있다. 前者를 “納稅義務者 本人率”이라고 하며, 後者를 “同業者率”이라고 한다.

마. 比率法

매입액, 매출액 등 소득금액의 산정요소로 되는 금액(추계의 기초 사실)에 일정한 비율(추계의 기초가치)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일정한 비율은 納稅義務者 本人率法, 同業者率法, 實調率法 및 標準所得率法 등이 있다.

① 本人率法

이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 본인을 조사하고 그 납세의무자의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실적 · 기장 또는 전년도 · 후년도분 등의 조사결과로부터 합리적으로 구한 所得率 등을 말하는 것이다. 納稅義務者 本人率은 납세의무자 본인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산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사정을 가장 잘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성을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② 同業者率法

이는 추계결정을 받는 납세의무자와 업종이 동일하면서 업체 · 규모 · 영업조건 · 입지조건 등이 개별적으로 유사한 비교적 인근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업자를 선정하여 실액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실적에 근거하여 평균적인 비율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實調率法

실조율이란 관내의 납세자를 업종마다 실지로 조사하고 실지조사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실조율은 관내 납세자 전원을 실지조사의 대상으로 하고, 그 전원의 수지계산 자료를 집계하여 그 소득을 등의 평균치를 산정한 것이다.

④ 標準所得率法

표준소득률은 전국적인 규모 또는 지방 국세청 단위로 업종마다 無作為 抽出法에 의하여 추출된 표본 조사 대상자에 관하여 실시한 실액조사의 실적에 統計學的方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적인 비율이다.

위에서 설명한 추계과세방법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것이 비율과 효율법이며, 이 두 가지가 병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日本에서도 종전의 우리가 사용했던 標準所得率이 존재한다. 성실 신고자인 青色申告者를 대상으로 동일업종마다 표본을 추출하여 통계한 수치로서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기준 경비율 제도의 비율 추정치와 비슷하게 측정되고 매입비용을 인정하는 부분도 비슷하다. 그러므로 일본도 우리나라가 시행하는 제도에서 야기되는 문제와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표본추출시 경비항목 중에서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보는 것이다.

(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소득금액과 생활수준이나 소비지출에 의한 推定所得 간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거주용 주택, 별장, 가사고용인, 자가용 승용차, 모터사이클, 요트나 유람선, 관광용 경비행기, 승마용 말 등)을 기초로 하여 법률이 정한 추계기준에 따라 과세소득금액을 추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추계과세의 요건을 살펴보면 거주자로서 당해과세년도와 그 이전 과세년도의 2과세기간에 걸쳐 납세의무자의 신고소득금액과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생활수준에 의해 산정한 推計所得金額간에 $\frac{1}{3}$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생활수준에 의해 산정한 年間 推計所得金額이 일정한 금액 이상이어야 추계 과세할 수 있으며, 추계과세소득금액의 산정요소에는 생활수준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로서 특정재산의 소유와 가사고용인의 고용을 들고, 추계과세소득금액의 算定要素 중 7개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추계소득금액이 기준금액의 2배 이상인자에 대하여 그 추정소득금액의 50%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추계과세 한다.

第3節 선행연구의 검토

“이기성의 논문(2003년)”에서는 소득금액의 추계과세방법은 다양화되지 못하고 표준소득률 하나에 의지하여 시행되었다고 하고 이 제도는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일률적인 소득률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이 불공평해지는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 해결책으로써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하였다.

기준경비율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긍정적인 면으로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정규증빙을 수취할 것이므로 수입금액 양성화가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부정적은 면으로서는 실제거래가 아닌데도 세부담을 줄이기 위

해 가공자료의 수수행위 등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김중택의 논문(2001)”에서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은 소득세제도에서 획기적인 변화이지만 표준소득률제도처럼 수십 년간 존속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하였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가 또 하나의 장부기피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선진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미래에는 기준경비율제도를 없애고 순자산액법, 소비액법, 은행예금액법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소득을 추계할 수 있도록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으로 세부담 및 4대 보험료의 증가로 사업자의 조세저항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장부기장에 대한 이익이 거의 없고 장부기장을 하더라도 기장 내용에 대한 소명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사업자로 하여금 기장을 회피한다고 인식하여 앞으로는 모든 사업자가 장부기장을 하도록 하고 기준경비율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며 무기장자는 외국 입법의 예에서 보듯 진실한 소득 추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준경비율 결정에 있어서도 과거의 통계자료를 이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통계학에 정통한 전문가 집단을 심의위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행녕의 논문(2002)”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 해결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시행상의 문제점으론 다음과 같다.

① 수입금액이 현실화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 지출비용을 모두 필요경비에 계상하여 기장하면 소득금액이 대폭 축소되어 신고될 것이다.

② 수입금액을 누락시킨 사업자의 경우도 그 사업과 관련하여 대응되는 경비는 실지 지출액 전액을 공제할 경우 주요경비가 그 만큼 많아져 소득금액은 실제소득보다 적어지게 된다.

③ 조사대상 선정시 주요경비의 지출비율이 높다고 과세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등 조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

④ 수십 년 동안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던 많은 사업자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

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한계선상에 있는 한계사업자가 혼란스러

위 할 것이다. 본인이 기장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기장능력이 없고 그 기장업무를 세무대리인에 위임시키지도 않는 상태에서는 스스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지를 판단이나 예상하기 어렵다.

⑥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주요경비에 고정비만 있는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이 크게 누증되어 과도한 과세가 될 수 있다. 즉 수입금액이 증가한 만큼 주요경비가 증가하지 않는 업종은 소득금액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다.

⑦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면 주요경비에 대한 무자료 증빙 거래 행위 등이 성행할 우려가 있다. 정규 증빙서류의 수수를 소홀히 한 사업자는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세연도 말에 어떤 방법으로 든 증빙서류를 구하려 할 것이므로 자료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⑧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기준경비율은 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어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다.

① 수입금액을 제대로 신고하는 납세의식의 함양도 필요하고 과세관청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입금액을 현실화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세관청의 조사권 남용 방지를 위해 조사대상 사업자 선정 시 이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의 기준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

③ 무기장 신고 사업자들에게 일괄적으로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간단한 안내와 기초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④ 단순경비율대상 사업자와 기준경비율 대상 사업자의 중간에 있는 한계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당수의 사업자가 해당될 것이므로 이들이 대처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⑤ 주요경비가 고정되어 수입금액이 커질수록 많은 소득이 발생할 업종은 기준경비율을 수입금액 단계별로 제정 할 필요가 있다.

⑥ 실물거래가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색으로 이를 밝혀내어 자료상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료상의 경우 조세법으로 처벌한 결

과 등에 대해 홍보하여 허위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

⑦ 기준경비율의 공표문제에 대한 세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확정은 당해연도 초에 확정 공표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第3章 추계과세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第1節 標準所得率制度

1. 소득금액계산방법 및 내용

(1) 소득금액계산방법

개인사업자는 당해 과세 년도의 수입금액에 標準所得率을 곱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

標準所得率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課稅標準 確定申告 後에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에는 課稅標準 確定申告書 및 그 添附書類에 의하고 課稅標準 確定申告 前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直前課稅期間의 所得率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내용

1) 總則

가. 目的

標準所得率은 所得稅法 제 80조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所得金額 推計決定 또는 更正을 하거나 法人稅法 제 66조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推計決定 또는 更正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標準所得率의 構成

① 標準所得率은 一般事業者率, 自家事業者率(이하 “一般率”, “自家率”

이라 한다) 및 收入金額率로 구분하고 각각 基本率 (收入 金額率의 경우 基本率 및 超過率)과 差等率로 구성된다.

② 標準所得率은 百分率로 표시한다.

다. 一般的 適用例

① 標準所得率은 綜合所得 중 事業所得, 不動產所得, 山林所得의 종목 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 다만, 其他所得에 대한 必要經費는 所得稅法 施行令 제 87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② 標準所得率 적용 대상이 되는 收入金額은 所得稅法上的 總收入金額 또는 法人稅法上的 事業收入金額을 말한다.

③ 이 標準所得率은 직전 과세년도 소득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標準所得率의 業種 分類에 관한 해석은 이 標準所得率 또는 각 稅法令(基本通則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韓國標準產業分類(統計廳告示 제 2000-1호, 2000.1.7)에 의한다.

라. 業種別 標準所得率의 適用例

① 業種別 標準所得率은 事業場別, 業態別, 種目區分別(코드번호 단위)로 당해연도의 해당 總收入金額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자영업예술가(94)에 대한 표준소득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개업자 또는 휴·폐업 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자영업예술가 등의 경우에는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자영업예술가 등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月數는 歷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인 월은 1월로 함)

* 소득금액 계산례 : 연간 소득금액이 5천만원인 자의 경우

$$(40,000,000 \times 22\%) + (10,000,000 \times 30.1\%) = 18,810,000$$

*월할 계산례 : 2001년 11월 2일에 개업한 작가의 수입금액이 1천만원 인 경우

① $10,000,000 \times 12/2 = 60,000,000$

② $(40,000,000 \times 22\%) + (20,000,000 \times 30.1\%) = 14,820,000$

③ $14,820,000 \times 2/12 = 2,470,000$

③ 共同事業에 대한 標準所得率은 事業場別 總收入金額에 적용한다.

④ 一般率과 自家率의 適用 區分

ㄱ. 다음 업종(코드번호)은 自家率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畜産業, 狩獵業 및 林業(01,02), 漁業(05), 鑛業(10~14),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40~41), 建設業(45), 運輸·倉庫 및 通信業(60, 61, 62, 630301~630909(630303은 제외), 64), 金融 및 保險業(65, 66, 67), 不動產賃貸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人的用役(94), 山林所得(98), 特定事業場이 필요 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ㄴ. 自家事業者는 실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例)

- 製造業 : 生産設備를 갖추고 製造行爲가 이루어지는 製造場
- 販賣業 : 商品의 保管과 引渡가 이루어지는 販賣場
- 서비스업 : 실제 用役의 提供 行爲가 이루어지는 장소

ㄷ. 賃貸人과 賃借人이 같은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自家事業者로 본다.

ㄹ. 課稅期間 中에 他家에서 自家로, 自家에서 他家로 轉換된 경우에 自家率 適用 對象 收入金額은 總收入金額을 自家事業場 使用期間에 따라 按分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ㅁ. 自家 및 他家 事業場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自家를 적용할 대상금액은 總收入金額을 總事業場 面積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按分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마. 基準經費率 또는 單純經費率 制定 前까지의 適用例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의 規定에 依하여 數시부과 결정시 所得金額을 追加 決定 하는 경우와 所得稅法 제 150조 및 같은 법 施行令 제 205조 제 3 項의 規定에 依하여 납세조합의 매월 分 所得을 計算하는 경우에 있어서 2002년 이후 과세년도에 적용된 基準經費率 또는 單純經費率이 制定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2001년 귀속 基準所得率을 적용하여 所得金額을 計算할 수 있다.

바. 高級基準의 適用例

① 高級飲食店 適用基準의 營業場 面積이란 홀 면적, 주방, 홀 내에 있는 화장실, 종업원 탈의실 면적이 포함된다.

② 한 벌의 供給代價가 高級衣類에 해당되면 上·下衣로 분리하여 판매하여도 高級衣類를 적용한다.

③ 조당 供給代價가 高級家具에 해당되면 개당 분리하여 판매하여도 高級家具를 적용한다.

사. 法人의 年度別 基準所得率 適用例

① 法人稅 決定日 현재 各 事業年度의 基準所得率이 制定되어 있는 경우, 2개년 에 걸치는 事業年度의 基準所得率은 각각 당해연도의 基準所得率을 月割 計算方法에 依하여 적용한다.

② 기타 法人稅 推計決定 또는 更正과 有關한 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총칙의 規定에 依한다.

(2) 差等率

가. 差等率의 一般的 適用例

① 差等率(輕減率 및 加算率)은 사업장 단위로 적용한다.

② 差等率을 적용한 基準所得率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로부터 절사한다.

* 계산례

기본률이 11.6이고 輕減률이 20%인 경우 적용한 표준소득률은 9.2임
($11.6 \times 20\% = 9.28 \rightarrow 9.2$)

나. 輕減率 適用排除 對象

① 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당해 사업장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화획득사업자, 장애인(경감율이 적용되는 3호의 장애인)은 경감율 배제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여러 개의 종목을 겸업하는 경우 각 종목별로 기본율을 계산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0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경감율을 적용하지아니한다.

다. 差等率 適用例

① 사업자가 2개 이상의 경감율 유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사업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② 加算率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로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가산을 적용대상자에게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율의 30%를 가산한다. 다만,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가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율의 20%를 가산한다.

* 계산례

[개인별 사업실상 반영 대상자]로 선정된 [일정규모 이상]의 고급 카페트 소매업자인 경우의 표준소득률 : 25.7(19.8×130%)

③ 사업자가 경감율 및 가산을 유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경감율 백분비와 가산을 백분비를 차가감하여 계산한 백분비율을 기본율에 가감한다.

* 계산례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가 [일정규모이상 무기장사업자]인 경우

→ 기본율의 10% 경감(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10% - 5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자 20%)



輕 減 率

1. 外貨獲得事業者

가. 適用對象者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5796호 개정 전) 제 14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① 수출사업(도매업중 수출업 포함)
- ② 군납 또는 용역 사업
- ③ 보세 가공업
- ④ 보세 임가공업
- ⑤ 수출품 임가공업
- ⑥ 수출품 생산업(수출용 물품 포함)
- ⑦ 국제 입찰 납품업 및 국제 입찰 용역업
- ⑧ 국제 입찰 하도급 납품업
- ⑨ 여행업
- ⑩ 관광 숙박업
- ⑪ 관광객 이용 시설업



나. 適用對象金額

구 조세감면규제법(대통령령 제 15796호 개정 전) 제 15조 제 1항, 제 2항 및 제 3항에서 규정하는 외화 획득 금액

다. 輕減率

20% 경감(기본율의 80% 적용)

2. 長期繼續事業者

가. 適用對象者

동일인 명의로 동일 업종을 동일 장소에서 5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자.

다만,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용, 도시계획, 사업장 임차계약의

해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동일 市·郡·區 지역에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동일 상호로 동일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때에는 동일 장소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나. 적용 제외자

- ① 法人
- ② 사업년도 중 폐업자

다. 적용 대상 업종

- ① 축산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01,02,05)
- ② 광업(10~14)
- ③ 제조업(15~38)
- ④ 도매업
- ⑤ 소매업 (5011, 5012, 503, 504, 505, 512~519, 521~525)
- ⑥ 숙박 및 음식점업(55)
- ⑦ 서비스업종(502, 526, 749, 930, 850) 해당 종목

라. 輕減率

20% 경감(기본율의 80% 적용)

3. 障礙者

가. 適用對象者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제 1항에 규정된 장애인(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적용 제외자

- ① 法人

다. 輕減率

20% 경감 (기본율의 80% 적용)

加算率

1. 一定規模 以上 事業者

가. 適用對象者

①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②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다만, 수입금액에 따른 超過率을 적용하는 종목(人的用役)은 이 加算率 적용에서 제외

업 종 별	당해연도의 사업장별 수입금액
축산업 및 수렵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산림소득	3억원 이상
제조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 5백만원 이상

(주) 1. 겸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산한다.

$$\frac{\text{주업종(수입금액이 큰 업종) 수입금액} + \text{종된 업종수입금액}}{\text{종된업종기준금액}} \times \text{주업종기준금액}$$

2. 신규사업자 또는 휴·폐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월할 계산방법은 총칙 규정을 준용한다.

나. 加算率

10% 가산 (기본율의 110% 적용)

다만, 이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율이 70.0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사

업자의 標準所得率은 70.0으로 적용한다.

다. 適用除外者

적용 종목의 기본율이 70.0 이상인 사업자

2. 個人別 事業實狀 反影 對象者

가. 適用對象者

수입금액(매출 과표) 신고수준이 특히 부진한 업소로서, 높은 유통마진 등에 의해 실제 실현된 所得率이 특히 높다고 판단되는 奢侈性 高價物品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 등

(例示)

- 고급가구, 고급의류, 고급장신구 등 사치성 고가물품 전문 판매업소
- 사회통념을 크게 뛰어넘는 고가의 음식점 또는 유흥업소, 신부드레스 대여점 등
- 주로 사치성 고가물품을 진열·판매하는 업소가 밀집한 지역에서 업황에 비해 수입금액 신고수준이 낮은 사업자 등

나. 適用對象者 確定 節次

- 사업실상에 비추어 標準所得率이 實所得率에 비추어 크게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公平課稅委員會의 심의를 거쳐 확정

다. 加算率

20% 가산 (당해 업소 적용 종목 기본율의 120%를 적용)

2. 標準所得率制度의 長·短點

당초 가장 능력이 없는 小規模 事業者가 간편한 방법에 의해 저렴한 비용으로 納稅義務를 수행하며 行政能率의 提高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標準所得率制度는 앞에서 서술한 순기능 외에 1995년부터 도입된 申告 納稅制

度の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記帳申告制度의 확산을 저해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標準所得率制度의 장단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長點

먼저 納稅者 측면에서 보면 標準所得率을 이용함으로써 記帳 能力이 없는 小規模 事業者가 低廉한 費用으로 納稅義務를 이행할 수 있었다.

2001년 귀속 綜合所得稅 申告 類型別 現況을 살펴보면 총 신고인원 1,782,369名 중 53.4%에 달하는 950,665名이 標準所得率에 의한 推計 申告를 하였다.

만약 이들 인원이 기장에 의한 신고를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담당 직원의 보수 또는 稅務代理人 등에 지출하는 보수 등 納稅協力 費用은 그 규모가 엄청 낮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해진다.

정부입장에서도 標準所得率을 이용함으로써 한꺼번에 대다수의 無記帳 事業者의 納稅義務를 이행할 수 있게 하여 行政 能率을 높일 수 있었다. 즉 전체의 53%가 넘는 無記帳 事業者의 所得金額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면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추계신고자의 결정세액이 전체 신고자의 결정세액 5,537,259천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3%인 1,066,551천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그 效率性을 짐작할 수 있었다.

<表3-1> 綜合所得稅 申告 類型別 現況(2001年 歸屬)

(單位:名, 百萬원, %)

구 분 신고유형	신 고 인 원		결 정 세 액	
		구 성 비		구 성 비
합 계	1,782,369	100.0	5,537,259	100.0
장부·증빙에 의한 신고	790,224	44.3	3,908,692	70.6
외부조정계산서첨부	409,631	23.0	3,424,775	61.9
자기조정계산서첨부	63,592	3.5	144,647	2.6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317,001	17.8	339,270	6.1
추 계 신 고	950,665	53.4	1,066,551	19.3

< 자료 출처. 국세청 통계연보 2001 >

(2) 短點

標準所得率 제도는 위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가. 근거과세제도의 확산 저해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1995년부터 소득세 과세제도는 기존의 政府賦課課稅制度에서 自進申告 納稅制度로 이행되었다.

자진신고 납세제도는 납세자가 행한 申告 行爲에 의하여 1차적으로 稅額이 確定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自進申告 納稅制度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기장에 의한 소득세신고를 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標準所得率이 前年度에 基準하여 一定率이 加算 또는 輕減되는 방식으로 제정되고 課稅標準 確定 申告 前에 발표됨으로써 납세자는 記帳申告時의 稅額과 비교하여 불리한 경우 記帳申告를 회피하게 된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추계신고시 기장신고시보다 稅務調査를 받을 확률이 적고 설혹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적출된 수입금액에 標準所得率을 곱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 부담하면 된다는 생각에 記帳申告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장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려고 하여도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조사시에 유리한 점도 있었다.

당초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申告便宜 提供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들은 標準所得率 자체를 “所得稅 負擔의 上限線”으로 오인하여 기장신고 혹은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를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開業醫 및 일부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경비의 대부분을 人件費가 차지하는 데 이러한 경비 구조의 특성상 推計申告에 의한 申告所得金額이 記帳에 의한 申告所得金額 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標準所得率에 의한 推計申告를 선호하게 되어 결국 記帳에 의한 申告를 회피하게 되는 경우로 작용하였다.

나. 실제소득률 반영의 미흡⁹⁾

標準所得率이 租稅行政에 의미 있는 參考資料로 이용될 수 있을 만큼 實際所得率을 잘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안중범(2000)은 기존의 直觀的資料라고 할 수 있는 産業聯關表를 활용하여 各業種別 所得率을 추계하여 이를 標準所得率과 비교함으로써 所得課標 陽性化率을 추정하고자 하였다. 標準所得率은 標本調査에 의한 所得調査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므로 所得率 構造에 왜곡이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客觀的資料인 産業聯關表와의 비교를 통해 標準所得率 構造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다수의 업종에서 産業聯關表上 所得率과 標準所得率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결과로 도출하였다. 實際所得率의 變動과 標準所得率의 變動이 상이한 업종이 많다는 것은 標準所得率이 所得稅 決定 手段으로서의 機能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물론 과세 당국에서는 매년 발표되는 標準所得率表에서 호황업종 및 과세표준 양성화 미흡 업종에 대한 標準所得率을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업종의 標準所得率을 인상시켜 課標 陽性化와 租稅衡平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實際所得率의 變動과 標準所得率의 變動이 상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일시적인 標準所得率의 임의적 조정은 오히려 세무행정에 대한 불신을 낳을 수 있고 아울러 課稅衡平을 저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標準所得率의引上은 課標陽性化率을 높여준다. 하지만 各 업종 間에 課標陽性化率의 隔差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標準所得率의 인상은 各 업종 間에 존재하는 課標陽性化의 격차를 줄여주지는 못할 것이다.

다. 개별사업자의 실상 반영의 미흡

標準所得率은 平均의 概念이었다. 따라서 개별사업자의 실상을 반영할 수 없다. 그러다보니 標準所得率制度는 한 업종 내에서도 稅負擔의 逆進性을 초래하고 있다. 즉 한 업종 내에서도 장사가 잘 되는 사업자일수록 매출액 중에서 필요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장사가 안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도 標準所得率은 장사가 잘 되든

9) 장기용, [기준경비율제도(안)의 평가와 보완 과제] 2001. 사회과학논집, 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잘 되지 않은 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다보니 標準所得率이 동일 업종 내에서도 富益富貧益貧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標準所得率의 10%를 가산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기장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은 標準所得率을 이용해 추계로 신고하는 것이 사업자에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라. 標準所得率 算定 方法上의 問題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국세청장은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平均的인 企業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標準的인 比率을 참작하여 標準所得率을 정하게 되어 있었다. 쉽게 말해 업종별로 표본을 뽑아서 標本調査를 하여 實際所得率을 파악하고 그것을 標準所得率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標本調査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한 시민단체가 국세청을 상대로 ‘標準所得率 算定の 根據資料’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위해 열람한 결과에 의하면, 1998년 귀속 소득에 사용할 標準所得率을 산정하기 위하여 345개 業種에 대하여 標本調査를 하면서 조사한 총표본수가 1,500개도 되지 않았다고 한다. 즉 한 업종에 대해 평균 5개의 표본조사도 하지 않았던 셈이다. 심지어 어떤 업종은 1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표본조사를 하기도 했다. 이렇게 적은 수의 표본을 뽑아서 하는 표본조사의 결과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標本調査는 稅務調査가 아니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이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리고 標本調査는 국세청의 필요에 의해 標準所得率을 산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협력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표본조사를 하려면, 오히려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에게 ‘세무행정상 필요하니 도와 달라’고 부탁해야 할 입장이었다.

또한 표본조사 대상자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세법상 정해진 신고의무가 아니므로 개별적인 실상을 세세히 보고한다는 의무감도 덜 했었을 것이다.

아래의 表는 2000년 및 2001년 귀속 標準所得率 調整 現況을 보여준다. 표에서 보듯 전체 업종 중 10%도 채 되지 않는 수의 업종만이 조정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表3-2> 2000年度 歸屬 標準 所得率 調整 現況

(單位：個)

업 종	구 분	종 목 수		2000년도 기본율 조정 종목수	
		한국표준 산업분류	표준소득률		
			1999		2000
합	계	1,121	904	906	79
축산업, 수렵업 및 어업		29	11	11	2
수 산 업		8	11	11	-
광 업		18	17	17	-
제 조 업		473	266	266	2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7	5	5	-
건 설 업		43	18	18	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62	301	302	11
음식 및 숙박업		22	24	24	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7	45	46	4
금융 및 보험업		34	13	13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91	90	90	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	-	-	-
교육서비스업		23	8	8	1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	24	24	13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4	69	69	6
가사서비스업, 기타소득, 산림소득		1	2	2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	-	-

<資料出處：國稅廳. 國稅統計. 2001>

<表3-3> 2001年 歸屬 標準所得率 調整現況

업 종	구 분	종 목 수			2001년도 기본율 조정 종목수
		한국표준 산업분류	표준소득률		
			2000	2001	
합	계	1,121	906	906	87
축산업, 수렵업 및 어업		29	11	11	-
수 산 업		8	11	11	4
광 업		18	17	17	-
제 조 업		473	266	266	38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7	5	5	-
건 설 업		43	18	18	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162	302	302	12
음식 및 숙박업		22	24	24	2
운수, 창고 및 통신업		57	46	46	1
금융 및 보험업		34	13	13	-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		91	90	90	6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	-	-	-
교육서비스업		23	8	8	3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	24	24	9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04	69	69	11
가사서비스업, 기타소득, 산림소득		1	2	2	-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	-	-

<자료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 2001>

第2節 基準經費率制度

1. 소득금액계산방법 및 내용

(1) 기준경비율의 구조

가. 基準經費率은 記帳申告者의 申告 資料를 活用하여 다음과 같은 논리로서 制定되었다.

수입금액				
주요 경비			기준경비	소득금액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즉 업종별로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主要經費를 제외하고 나머지 經費가 收入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基準經費率로 산정한 것이다.

나.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은 他家 事業者 즉 事業場에 대한 賃借料를 지급하는 事業者에 적용되는 率(他家率)을 一般率로 한다.

自家 事業者에게 적용되는 率(自家率)은 별도로 두지 않고, 一般率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自家 事業者에게 적용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고자 한다.

(2) 所得金額計算方法

가. 基準經費率에 의한 所得金額 計算方法

所得金額 = 收入金額 - 主要經費(買入費用 + 賃借料 + 人件費) - (收入金額 × 基準經費率)

다만, 基準經費率에 의하여 계산한 所得金額(基準所得金額)이 單純經費率에 의해 계산한 所得金額에 國稅廳長이 정하는 倍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倍率을 곱하여 계산한 金額으로 할 수 있다.(2003년의 경우 1.4 → 2004년 귀속분까지 한시적 적용)

나. 單純經費率에 의한 所得金額 計算方法

單純經費率은 基準經費率制度의 도입시 예상되는 일시적 충격을 감안하여 소규모 사업자들이 과거 標準所得率制度和 비슷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begin{aligned} \text{所得金額} &= \text{收入金額} - (\text{收入金額} \times \text{單純經費率}) \\ &= \text{收入金額} \times (1 - \text{單純經費率}) \end{aligned}$$

(3)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 適用對象者의 구분

가. 基準經費率 適用對象者는 直前年度의 收入金額의 合計額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또한 單純經費率 適用 對象者는 直前年度의 收入金額의 合計額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나 당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한다.

업종구분	연도별	2002년~2003년	2004년~2005년	2006년
		귀속	귀속	귀속부터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1억 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이때, 업종구분은 稅法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韓國 標準産業分類를 기준으로 한다.

나. 記帳申告와 基準經費率에 의한 申告의 比較

기장에 의한 신고는 수입금액에서 기장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반면,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는 推計申告이므로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한 비용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簡便帳簿對象者가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를 記帳稅額控除하나, 複式簿記義務者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申告不誠實 加算稅 20%를 부과하며 簡便帳簿對象者 중 直前年度 收入金額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역시 20%의 無記帳 加算稅가 부과된다. (所法 81조⑩, 所令 147조의 3 ①)

한편 소득세 조사시 기장에 의한 신고 사업자는 비용 전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지만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시와는 달리 주요경비의 지출 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4)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의 內容

가. 適用範圍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은 所得稅法 제 80조 제 3항 단서에 규정에 의한 所得金額 推計決定 또는 更正을 하거나 法人稅法 제 66조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推計決定 또는 更正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一般的 適用例

①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은 綜合所得 중 事業所得, 不動產所得, 山林所得의 種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

②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 적용 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동업자 단체·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附加價値稅法 제 32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 수입금액을 말한다.

③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은 直前課稅年度 所得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의 업종 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 또는 각 稅法令 (基本總則 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韓國標準産業分類에 의한다.

다. 業種別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의 適用例

① 業種別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은 事業場別, 種目 區分別(코드번호단위)로 해당 收入金額에 곱한다.

② 共同事業者에 대한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은 事業場別 總收入金額에 적용한다.

③ 人的用役 提供 事業者의 單純 經費率 (基本率, 超過率) 適用.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基本率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超過率을 적용한다. 다만,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환산한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한다.(월수는 歷에 따라 계산하되 1月 미만은 1月로 함)

* 소득금액 계산례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연간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外販員인 경우

$$\{40,000,000 - (40,000,000 \times 76\%)\} + \{10,000,000 - (10,000,000 \times 66.4\%)\} \\ = 12,960,000$$

* 月割 計算例 : 2003년 11월 2일에 개업한 外販員의 수입금액이 1천만원인 경우

$$\begin{aligned} & \cdot 10,000,000 \times 12/2 = 60,000,000 \\ & \cdot \{40,000,000 - (40,000,000 \times 76\%)\} + \{20,000,000 - (20,000,000 \times 66.4\%)\} \\ & = 16,320,000 \\ & \cdot 16,320,000 \times 2/12 = 2,720,000 \end{aligned}$$

라. 一般率과 自家率의 適用 區分

① 基準經費率의 自家率 適用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기준경비율의 一般率에 업종구분 없이 0.4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12.0임
($11.6 + 0.4 = 12.0$)

② 單純經費率의 自家率 適用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一般率에 업종 구분 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3 - 0.3 = 90.0$)이므로 90.0을 적용한다.

③ 다음의 업종에 대하여는 自家率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 어업, 광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인적용역, 산림소득 등

④ 자가사업자는 실제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賃借料(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 제조업 : 生産設備를 갖추고 製造行爲가 이루어지는 製造場
- 판매업 : 商品의 保管과 引渡가 이루어지는 販賣場
- 서비스업 : 실제 用役의 提供 行爲가 이루어지는 장소

⑤ 賃貸人과 賃借人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自家事業者로 본다.

⑥ 課稅期間 중에 他家에서 自家로, 自家에서 他家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상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에 따라 按分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⑦ 自家 및 他家事業場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自家率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總收入金額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 금액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 면적에 자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按分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마. 障礙者에 대한 適用 特例

①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로서 所得稅法 施行令 제 107조 제 1항에 규정된 장애인. 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단순경비율)×20%

③ 장애인에 대해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 절사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인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times 20\% = 92.2$)

바.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의 적용례

① 당해 과세년도에 대한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直前 課稅年度의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을 적용한다.

② 그 후 당해연도의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이 변경되는 경우 所得稅法 제 8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변경된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所得稅法 제 74조(課稅標準 確定申告의 特例)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사. 법인의 연도별 기준경비율 적용례

①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년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과세년도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년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2개년에 걸치는 사업년도의 기준경비율은 각각 당해년도의 기준경비율을 月割 計算 方法에 의하여 적용한다.

아. 倍率

① 법적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 3항 제 1호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基準所得金額)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 : 1.4배

③ 적용 제외자 : 法人

④ 適用例

소매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이 2억원이며 주요경비는 1억5천만원인 사업자의 기준경비율이 7%이고, 단순경비율이 90%인 경우

ㄱ.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 ₩36,000,000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200,000,000-₩150,000,000-(₩200,000,000×7%)=₩36,000,000

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 : ₩28,000,000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 × 배율

[₩200,000,000-(₩200,000,000×90%)]×1.4 = ₩28,000,000

ㄷ. ㄱ의 소득금액이 ㄴ의 금액보다 많으므로 ㄴ의 금액 28,000,000원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主要經費의 範圍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買入費用의 範圍

① ‘買入費用’은 다음에 정하는 財貨의 買入(事業用 固定資産의 買入을 제외함)과 外注加工費 및 運送業의 運搬費로 한다.

ㄱ. ‘財貨의 買入’은 財産的 價値가 있는 有體物(商品·製品, 原料, 消耗品 등 類型的 物件)과 動力·熱 등 관리할 수 있는 自然力의 買入으로 한다.

ㄴ. ‘外注加工費’는 사업자가 販賣用 財貨의 生産, 建設, 建築 또는 加工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ㄷ. ‘運送業의 運搬費’는 陸上, 海上, 航空 運送業 및 運輸 관련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①”항의 ‘外注加工費’와 ‘運送業의 運搬費’ 이외의 용역을 제공 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買入費用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買入費用에 포함되지 않는 用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ㄱ. 음식료 및 숙박료

ㄴ. 창고료(보관료), 통신

ㄷ.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 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ㄹ. 수선비(수선, 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買入費用으로 함)

ㅁ. 事業서비스, 敎育서비스, 個人서비스, 保健서비스 및 其他서비스(用役)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나. 事業用 固定資産에 대한 賃借料의 範圍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建築物 및 機械裝置 등 固定資産을 타인으로부터 賃借하고 그 賃借料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다. 在庫資産에 포함된 主要經費의 計算

①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買入費用’과 ‘事業用 固定資産에 대한 賃借料’ 및 ‘從業員의 給與, 賃金, 退職給與’(이하 “主要經費”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期初在庫資産에 포함된 主要經費를 가산하고 期末在庫資産에 포함된 主要經費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主要經費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主要經費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主要經費로 할 수 있다.

② 위 “나”의 경우 直前課稅年度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期初在庫資産에 포함된 主要經費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begin{aligned} & \text{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 = \text{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times (\text{직전 과세연도 당해 업종의 단순경비율} - \text{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업종의 기준 경비율}) \end{aligned}$

(6) 證憑書類의 種類

가. ‘買入費用’과 ‘事業用 固定資産에 대한 賃借料’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① 稅金計算書, 計算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을 수취한 금액

② 所得稅法 제 160조의 2 제 2항 단서와 같은 法 施行令 제 208조의 2 및 같은 법 施行規則 제 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ㄱ. 所得稅法 施行令 제 208조의 2 제 1항

- 供給받은 財貨의 去來 件當 金額(附加價値稅 包含)이 5만원 미만인 때

- 거래상대방이 邑·面 지역에 소재하는 簡易課稅者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 國內 사업장이 없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과 거래한 경우

- 國家·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

- 非營利法人(收益事業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

ㄴ. 所得稅法 施行規則 제 95조의 2

-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

- 國外에서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

- 公賣·競賣·收用에 의해 재화를 공급 받는 경우

- 不動產賃貸用役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傳貰金 또는 賃借保證金에 대한 附加價値稅額을 賃借人이 부담하는 경우

-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送金明細書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i) 不動產賃貸用役을 공급받는 경우

ii) 賃加工用役을 제공받는 경우

iii) 簡易課稅者로부터 再活用廢資源 또는 再活用可能資源을 공급받는 경우

ㄷ. 위 “ㄱ” 및 “ㄴ”에 해당되지 않는 ‘買入費用’과 ‘事業用 固定資産에 대한 賃借料’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서에 아래의 [主要經費 支出 明細書]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表3-4> 買入費用, 賃借料의 範圍와 證憑書類의 種類 告示 書式

주요경비지출명세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 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대상거래내역					
⑤ 일련번호	거래처(공급자)		⑧ 매 수	⑨ 거래품목	⑩ 거래금액
	⑥ 상호 (성명)	⑦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나. ‘從業員의 給與·賃金·退職給與’는 아래의 증빙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① 급여·임금은 勤勞所得 源泉徵收領收證 또는 支給調書を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② 퇴직급여는 退職所得源泉徵收領收證 또는 支給調書を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③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日傭勤勞所得에 대하여는 所得을 지급받은 자의 住所, 姓名 住民登錄番號 등 人的事項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2. 基準經費率制度의 장·단점

가. 基準經費率制度의 期待效果¹⁰⁾

① 申告納稅制度에 附合

基準經費率制度에서는 無記帳事業者도 지출한 主要經費에 근거하여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申告納稅制度에 부합하게 된다.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자들에게 1년간 지출한 모든 경비에 대해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소득금액을 계산·신고하라는 것은 무리 일 수 있지만 사업자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主要經費 즉 買入費用, 賃借料 및 人件費 등은 사업자 스스로가 그 내역을 입증토록 의무를 부여한다. 따라서 主要經費의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所得을 計算하게 함으로써 標準所得率과 같은 劃一的 課稅方法을 지양하고 납세자의 개인별 실상에 맞는 公平課稅를 실현할 전기가 마련된 것이다.

② 記帳能力의 培養

買入費用 및 賃借料 등에 대한 정규증빙을 수취·보관하게 하고 人件費 등은 지급조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 보고 하여야만 필요경비로서 인

10) 이행녕,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2002

정이 되므로 이에 따른 훈련 효과로서 자연스럽게 기장능력이 배양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基準經費率에 의한 推計申告者도 所得稅 調査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조사회피를 위한 기장회피 관행이 점차 근절되리라 본다.

이와 같이 基準經費率制度는 추계신고의 매력을 감소시키고 無記帳 事業者에 대한 불이익이 標準所得率制度하에서의 불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記帳이 빠르게 확대되리라고 본다.

③ 실지소득률의 반영

標準所得率은 일부 업종의 標本調査와 經濟指標에 의해 그 비율을 제정하므로 실지소득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基準經費率도 실지소득률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성실한 사업자의 실제 신고 자료에 의해 산정하므로 標準所得率보다는 훨씬 실지소득률에 가까운 값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매년 申告所得率 水準이 향상되는 申告 資料에 의해 基準經費率을 조정해 간다면 基準經費率이 現實化되어 客觀性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④ 課稅資料 인프라 構築

標準所得率制度하에서 推計申告事業者는 비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혀 없고 정규증빙수취에 의한 所得稅 節稅效果가 없으므로 적극적인 정규증빙 수취유인이 없었다. 그러나 基準經費率制度하에서는 사업자는 所得稅의 節稅를 위해 정규증빙을 적극적으로 수취할 것이므로 거래상대방의 課稅陽性化의 效果가 있다. 이런 현상이 사업자간에 확산되면 과세자료의 노출이 연쇄효과가 있을 것이며, 課稅資料 인프라 構築에 상당히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標準所得率制度下에서와는 다르게 主要經費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득세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稅金計算書, 計算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받아야 될 유인이 엄연히 존재하므로 이에 따라 去來當事者間 連鎖的인 課稅資料 陽性化의 效果가 매우 크다.

⑤ 國民年金 및 國民健康保險의 財政 擴大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사업자가 標準所得率에 의해 推計申告를 한 경우 勤勞所得金額에 따른 國民年金 및 醫療保險 徵收에 있어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근로자의 소득이 투명하여야 정확한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데 표준소득률에 의한 推計申告 事業者의 경우에는 源泉徵收義務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그 정확한 부과 및 징수업무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基準經費率에 의한 推計申告의 경우 人件費는 주요 경비로서 원칙적으로 源泉徵收義務를 이행하여야 經費로서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소득금액 노출로 인한 國民年金 및 國民健康保險料의 원활한 賦課·徵收로 이들 재정의 확충도 기대해 볼 수 있다.

한편 위에 제시된 期待效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基準經費率이나 單純經費率이 實際所得率보다 낮다면 납세자가 기장신고할 유인은 작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추계신고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推計申告에 의한 所得率이 實際所得率보다 하위의 수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基準經費率과 單純經費率은 實際所得率보다 높게 유지함으로써 기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증빙서류를 수취한 主要經費를 첨부할 때 申告所得率을 더욱 낮출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基準經費率은 높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유도에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¹¹⁾

나. 基準經費率制度의 問題點

基準經費率制度는 標準所得率制度에 의해 비뚤어졌던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自己申告制度에 부합하는 根據課稅主義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제도이다. 즉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등 標準所得率制度의 장점과 主要經費에 대한 증빙을 수취·보고하도록 하여 근거과세제도의 일부분을 도

11) 박찬웅,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2002.8

입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우리나라 소득세제도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라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運用의 妙」를 살리지 못한다면 과거 標準所得率制度에서 보듯 또 다른 문제점을 과생시킬 수 밖에 없다. 비록 시행된지 2년여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基準經費率制度가 標準所得率制度和 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① 실제소득률과의 괴리문제

현재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은 기장신고자의 申告 資料를 기초로 하여 그 率을 산정하게 된다. 도입초기단계인 지금 記帳申告者들의 申告 資料가 實際所得率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01년 귀속분까지 적용되었던 標準所得率制度는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을 위한 자료로 쓰였을 뿐 아니라 기장사업자도 표준소득률을 ‘申告所得率의 上限’으로 인식하여 申告所得金額을 調節하는 手段으로 사용하여 왔기 때문이다.

즉 기장신고자들이 표준소득률의 60~80% 수준으로 신고했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基準經費率 또는 單純經費率이 實際所得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② 기준경비율 계산 공식의 복잡성¹²⁾

과거 표준소득률은 소득중심으로 계산되었으나, 기준경비율은 기준경비를 계산하여 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이 결정되므로 산출과정이 복잡한 편이다. 특히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실지출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고, 개별항목에 대하여 다시 세부항목들이 열거주의로 나열되어 일반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소득세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③ 주요경비 구분의 모호성

현행 주요경비(매입비용)은 재화의 공급과 일부 용역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어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1년동안 발생한 모든 거

12) 기준경비율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임충래 세무사

래에 대하여 한꺼번에 구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장시간이 소요되고 또한 증빙을 근거로 주요경비 특히 매입비용을 구분하는데 오류 발생의 소지가 크다.

이는 용역의 공급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용역의 공급에 대한 정규증빙의 수취를 기피하게 되는 것이며 투명한 과세인프라구축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④ 納稅協力費用의 增加問題

基準經費率制度의 시행으로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인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그 업무를 위탁하거나 혹은 전담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야 할 것이다. 이는 장부기장을 유도하여 根據課稅制度를 확립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겠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납세협력비용을 또 하나의 租稅로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⑤ 架空資料 問題

기준경비율제도의 요점은 買入費用, 賃借料, 人件費等 主要經費에 대한 정규증빙의 수취가 소득세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라도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資料商’ 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우려도 있다. 즉 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년도말에 實物去來가 없는 虛僞 稅金計算書 및 計算書의 수수행위가 횡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료상들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된다고 하겠다.

또한 主要經費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지므로 主要經費가 아닌 증빙을 主要經費로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주요경비에 대하여 적정하게 신고 되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사후 확인 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⑥ 課稅標準 陽性化의 問題

과세표준 현실화율이 낮은 업종 내지 사업자의 경우 표준소득률제도보다 오히려 세부담이 작아질 우려도 있다. 즉 收入金額의 現實化가 낮은 업종에서 지출비용 모두를 主要經費로하여 所得金額을 신고한 경우 그 稅負擔은 낮아질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입금액 현실화율이 낮은 업종

및 개별사업자의 경우 지속적인 계도 및 강력한 조사를 통해 수입금액을 현실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⑦ 급격한 세부담 증가의 문제

현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과거 시행하던 표준소득률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경우에도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에 따른 저항을 우려하여 所得金額 上限制度(2003년 귀속분의 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1.4배)를 두고 있다. 따라서 과거 표준소득률에 익숙한 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제도는 「명칭만 바뀐 標準所得率制度」로 오해할 우려가 다분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2004년 귀속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소득금액 상한제도의 유예를 연장하지 않아야 한다.

물론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 생각되지만 「根據課稅制度의 確立」이라는 大義를 위해서는 꾸준한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급격한 세부담 증가문제해결을 위해서는 限界 事業者를 위한 一時的 稅 減免 措置를 시행한다든지, 所得稅率 引下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⑧ 弘報 不足의 問題

기준경비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증빙의 수취를 소홀히 하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지난 47년간 지속적으로 적용되어온 표준소득률제도에서 정규증빙의 수취는 소득세 부담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아니었으므로 기준경비율 제도에 의한 과세가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 사업자의 세부담은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의 신고제도는 우리나라 소득세제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인데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⑨ 推計方法의 劃一的 適用問題

소득금액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과거의 표준소득률제도나 현재의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의 實際所得金額의 近似值를 얻는 수단으로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따라서 다양한 추계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第3節 推計課稅制度의 比較 · 評價

1.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비교

標準所得率과 基準經費率制度의 차이점은 다음 표의 내용으로 要約할 수 있다.

<表3-5> 標準所得率制度와 基準經費率制度의 差異點 比較

구 분	표준소득률	기준경비율
(1) 소득금액계산방법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 계산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	수입금액에서 실지 지출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 계산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2) 소득세 신고	무기장자의 신고 간편 -다수의 무신고자에 일률적으로 적용 -납세자의 개별실상 반영 불가능 →부과과세제도에 적합	무기장신고자도 자기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인건비등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경비만 인정 -납세자의 개별 실상 반영 →신고납세제도와 부합
(3) 경비지출에 대한 입증책임	수입금액 대비 일정율을 필요경비로 추산하여 인정하므로 사업자는 경비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전혀 없음	사업자는 주요경비로서 신고한 금액에 대해 주요경비로서 지출한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4) 소득세 조사에 대한 부담	조사에 대한 부담 없음 →추계신고 선호 이유	무기장신고자도 주요경비계상부분을 검증 받아야 함
(5) 매출누락 적발시	수입금액 누락액에 표준소득	수입금액 누락액에 상응하는

세금부담	를을 곱한 금액만큼만 추징하므로 기장신고자에 비해 세부담 면에서 유리함	원가를 입증 못하면 누락액 전체를 소득금액에 가산하므로 기장신고자의 세부담과 동일
(6) 기장 유도 효과	부정적	주요경비 부분에 대한 정규증빙수취를 강제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장 유도에 효과적
(7) 기장신고사업자에 대한 영향	표준소득률을 최고 신고율로 오해하여 표준소득률 이하로 소득금액을 조절하는 경향이 있었음	주요경비는 정규증빙을 수취해야 하고 기준경비율은 기타경비의 비율일 뿐 이므로 소득금액 조절 기능은 없음
(8)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영향	추계신고자는 매입 자료를 수취할 유인이 없음 →경비지출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주요경비의 부분은 정규증빙 수취 여부에 따라 세부담에 영향을 끼치므로 정규증빙수취 유인이 큼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에 대한 효과가 큼

2. 외국의 추계과세제도와와의 비교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과반이 넘는 사업자가 추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장에 의한 신고보다 추계에 의한 신고가 사업자에게 더 많은 메리트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소득률이나 기준경비율이 실제소득률 수준보다 낮는데 그 이유가 있다. 즉 과거의 표준소득률은 소수의 사업자를 상대로 조사하여 제정 발표한 평균적인 개념의 비율이 있으며 현재의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또한 기장신고사업자들의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제정하는 평균적인 비율의 개념이다. 이러한 제정방법이 실제소득률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제정된 비율 역시 실제소득률 보다 하위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기장에 의한 신고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둘째, 기장신고자에 대한 역차별적인 대우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은 기장신고자에 집중되어 왔다. 기장신고자들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그들이 비치·기장한 기록이 입증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그에 대한 입증에 실패 시 추정세액은 기장신고자가 훨씬 불리하게 되었다. 즉 추계신고자의 경우 매출 누락액은 「매출누락액 × 표준소득률」의 금액만큼 소득금액에 가산되지만 기장신고자의 경우 대응 원가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출 누락액 전체가 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결과가 되어 오히려 기장사업자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추계방법의 획일적 적용이다. 과거 표준소득률제도와 현재의 기준 경비율제도의 경우 추계방법상 간편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완전한 실제소득금액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분명 한계가 있다.

미국, 일본의 경우 순자산법, 현금지출법등을 위시한 여러 가지 추계방법을 적용하여 실제소득금액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추계방법 또한 소득금액에 한정하여 시행하기보다는 수입금액을 먼저 파악하여 소득금액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을 밟아가고 있으므로 좀 더 정교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도가 좀 더 선진적인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면 추계과세방법을 좀 다양화하고 정교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계소득률이 실제소득률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설정하여 기장에 대한 신고를 유도 할 필요성이 있다.

第4節 改善方案

1) 실제소득률의 반영

실제소득률과의 괴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基準 經費率 산정에 있어서 실지세무조사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基準經費率 및 單純經費率은 실제소득률 이상이 되도록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기신고제도 정신에 부합하는 根據課稅制度의 定着을 위해서는 장부의 비치·기장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세법에서 요구하는 의

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기장사업자보다 그렇지 못한 추계사업자를 우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기준경비율의 산정에 있어서도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들의 반발을 예상하여 그 수준을 조절할 우려가 있다. 그 동안 票를 의식해 稅務行政이 움츠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무기장 사업자가 기장사업자보다 상당한 정도의 불이익이 있어야 기장이 확대될 수 있는 것이므로 基準經費率이나 單純經費率의 산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계산이나 사업자 및 그 단체의 반발이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 주요경비 구분의 모호성 해결방안¹³⁾

현행 주요경비를 재화의 공급과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 주요경비의 범위를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까지 확대 적용하여야 한다.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모두 주요경비로 인정한다면 첫째, 기준경비율제도의 인식이 낮은 추계신고자의 주요경비지출 인정 부분에 대한 납세자와의 조세 마찰을 방지할 수 있으며 둘째, 재화의 공급은 물론 용역의 공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규증빙의 수취를 유인함으로써 과세자료 인프라구축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모든 매입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수취하지 않으면 세부담이 늘어나므로 정규증빙 수수의 관행이 자연스럽게 확립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납세협력비용의 증가문제

현재 시행되고 있는 記帳稅額控除制度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현재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 산출세액에 당해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frac{10}{100}$ 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다.(所法 제 56조의 2) 그러나 실제로 공제되는 세액은 납세협력비

13) 기준경비율제도개선에 관한 소고. 임충래 세무사

용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所得金額 階級별로 그 控除稅額을 定額化한다거나 控除率을 上向調整한다거나 또는 限度額을 인상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4) 기장사업자의 무기장신고시 세무조사 강화

현행기준경비율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기장사업자가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고서라도 세부담이 적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를 한 경우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무조사에 대한 강화방침을 일반 납세자에게 적극 홍보하여 무기장사업자에 대하여 기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기준경비율제도의 본래 목적이 성취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축소

근거과세제도에 부합하는 기장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추계신고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과거 표준소득률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고 있는 단순경비율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범위도 점차 축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완전한 근거과세제도의 정착을 위한 바탕이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6)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산정의 적정성 문제¹⁴⁾

한국세무사회가 2001년 귀속 소득 신고분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낮거나 결손으로 처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현재 세무사가 기장을 하고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표본조사(168개 업체, 업체별 및 종목별로 분석함)를 실시한 결과, 전체 168개 업체 중 112개 업체(66.6%)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수입금액은 과소 신고하고 주요경비(증빙서류)가 많을 경우 소득금액이 적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장사업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일부업종 등은 기장에 의한 세부담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기장에 의한

14) 세무사신문. 2004.5.16 기준경비율제도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 건의

신고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무기장자의 수입금액 산출세액에 대한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기장을 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다”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2001년도 귀속 소득을 추계로 계산한 표준소득금액보다 2002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소득금액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수입금액별로 단순경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연간 수입금액이 4,000만원을 기준으로 표준소득률을 달리 적용했던 인적용역(업종분류:94)의 경우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1년 귀속 추계소득금액보다 오히려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표준소득률 적용시보다 4,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계층은 추계소득금액이 줄어들었고, 4천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의 추계소득금액이 변함이 없다면 과세형평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적시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년도 소득분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 본 결과 대부분의 기장사업자가 무기장에 의한 신고시 보다 세부담이 높아짐으로써 장부 작성을 포기하는 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일부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재조정하는 한편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도록 무기장자에 대한 세원관리(세무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종전 기장에 의한 신고자가 차후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침을 확실하게 공표해야 할 것이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 및 투명한 납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의 취지와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중간자인 세무대리인 역할의 중요성”을 납세자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에 따른 주요경비지출 인정여부에 대한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작성한 “주요경비지출금액 및 소득금액계산서”를 검토하여 추계신고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第4章 結 論

그동안 우리나라의 所得稅制은 無記帳事業者에 대한 課標現實化 및 그에 따르는 所得金額 現實化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주안점을 두고 있었으면서도 소기의 결실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이유로 소위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해 所得控除制度 및 稅額控除制度의 新設 등 단기 처방을 내놓기에 급급했던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應能負擔을 原則으로 하는 소득세 제도에 있어 자영업자의 課標現實化 및 이를 통한 稅負擔의 衡平性을 향상시키는 것이야말로 所得稅制度에 있어 제1의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1999년 4월 국민연금제도를 도시자영업자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자영업자의 소득 과약문제는 비단 세부담의 불공평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보험제도내에서의 부담 불공평성 문제로까지 확대되었고, 국민건강보험 통합 운영에 있어서도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종전의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통합 운영됨에 따른 자영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의 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에 대한 과약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소득과약 문제가 조세부문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친 중차대한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 동안 과표양성화에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받아 온 표준소득률제도의 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은 매우 획기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추계과세제도의 여러 방법들을 비교분석하고 현행제도를 비교평가하여 향후 개선방향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현행 기준경비율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제 소득률과의 괴리 문제이다. 현재 기준 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은 기장신고 사업자의 신고 자료를 기초로 제정되는 데 그 신고자료들이 실제 소득률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 ② 기준 경비율 계산 공식이 복잡하다는 것이다. 즉 주요경비 각각에 대한 세부항목들이 열거주의로 나열되어 쉽게 이해하여 소득세 신고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 ③ 주요경비 구분에 대한 모호성의 문제이다. 즉 증빙을 근거로 주요경비,

특히 매입비용을 구분하는 데 오류발생의 소지가 크다.

④세법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업자들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협력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⑤기준 경비율 제도에 의한 소득세신고에 있어 정규증빙 수취여부는 세부담면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의 수수행위가 예상된다.

⑥과세표준 현실화율이 낮은 업종 내지 사업자의 경우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⑦외국의 경우 다양한 추계방법들을 동원하여 소득금액 등을 추계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너무나 획일적으로만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실제 소득률에 가까운 기준경비율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실시세무조사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주요경비에 대한 구분의 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재화의 공급과 일부 용역의 공급만을 인정하는 것에서 주요경비의 범위를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③납세협력비용의 증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기장세액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④기장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여 기장에 의한 신고를 유도 할 필요가 있다.

⑤현행 기준경비율 및 단순 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⑥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일부 업종의 비율을 재조정하고 또한 무기장 신고 사업자의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여도 그 시행에 따른 과세당국의 의지가 약하다면 제도의 도입에 따른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대대로 연쇄적인 과표양성화가 이뤄질 경우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 대해 정치적 계산 혹은 현재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현실론이 득세할 경우 표준소득률제도가 그랬던 것처럼 기준경비율제도 또한 수십년동안 존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根據課稅制度의 確立을 통한 稅負擔 衡平性 提高라는 목표의 달성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세의 부과가 소득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후 소득세 행정의 주가 된 적이 있었다. 즉 매출 누락으로 축소 신고된 수입금액에 단순히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稅務干涉이 거의 없었음은 물론 소득세 조사 등은 비교적 자료 파악이 쉬운 기장사업자 위주로 행해진 측면들이 있었다. 그러나 표준소득률제도가 폐지되고 기장에 의한 根據課稅制度로 가기 위한 基準經費率制度를 시행하는 현재에 있어서는 기상신고사업자에 대한 세무간섭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추계신고자의 소득금액 파악을 위한 조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誠實記帳事業者에 대한 메리트부여 혹은 우대조치를 시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과세자료 인프라의 구축을 통한 과표양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으로 세부담 축소를 위한 허위자료의 수수행위가 횡행할 우려가 크므로 가공자료의 근절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번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국민의식의 혁신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국민의 납세의식이 경제규모에 걸맞게 성숙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학교 교육 단계에서의 경제교육의 강화는 물론 기존 사업자들에게도 납세의식 향상을 위한 대대적 캠페인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 및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에 대한 문헌조사 연구의 일반적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미래의 연구방향은 외국제도와 심층적 비교분석하여 획일적 방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우리나라 추계과세방법의 다양성에 대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필요하다. 또한 징수자 및 납세자에 대한 의식을 실증 분석하여 그 의식차이를 줄일 수 있는 실증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최명근 : “세법학 총론” 세경사 1995
- 김완석 : “소득세 법론” (주)조세통람사 1997
- 임상엽 : “세법개론” 상경사 2002
-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2003
- 국세청 :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국세청 보도자료 2000.6
- 국세청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2000.1
- 김중택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행녕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수현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박찬용 :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장상운 :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기성 : “소득세 과세방법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혜성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장기용 : “기준경비율제도(안)의 평가와 보완과제 - 표준소득률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논집 2001
- 최경식 : “표준소득률제도 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
건양대학교 건양논총 2001
- 정재연, 신현걸 : “기준경비율 결정시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학 연구 제 20권 제2호 2003

- 서희열, 권성수 : “기준율과세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논총 2000
- 김윤수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전반적 해설”
조세신보사 월간경리 제28권 제5호 통권 327호 2004.5
- 임충래: “기준경비율 제도 개선에 대한 小考”
세무사 신문, 한국세무사회



< Abstract >

The income tax shows direct and reasonable taxable capacity of each person by regarding "income" taxable objects, in consideration of people's financial situations and application of a progressive tax so that it could be the best tax system to materialize the principle of taxable burden by each.

We call businessmen people who earn income from real-estate lease income, business income and forest income among incomes of taxation articles of income taxes and they should record account books for all transaction to be understood objectively by bookkeeping by double entry. Namely, the taxation of income tax of businessmen should be done principally based on the evidence of bookkeeping by double entry.

However, in such cases of some businessmen who don't record account books, they are recognized as an exception of the principle of taxation based on evidence and the tax authorities rule measures to settle taxation based on evidence and the tax authorities rule measures to settle taxation income in the income tax law, we call it estimation taxation system. In the income tax law of Korea, the estimation taxation system has introduced and taken effect the standard expenses rate system starting from the returned tax of 2002 in the standard income tax rate system. Accordingly, the study compares and analyzes various methods of the estimation taxation system and the current system, and then aims at proposing policy courses as well as improvements henceforth.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tandard expenses rate system are as below.

① The separation from the actual income rate. The current Standard Expenses rate and simple expenses on have been established by the

reported documents of account books keeping-businessmen but we don't make sure that the reported documents have been made out based on the actual income rate.

② A complex calculation of the standard expenses rate. It is not easy to report income tax because of just the numeration of the details of each main expense.

③ Vagueness of the classification among main expenses. The possibility of mistakes could highly take place in classifying main expenses based on evidence, especially purchase expenses.

④ When businessmen short of knowledge for the tax law report their income taxes, the costs for association could grow.

⑤ In income tax report by the standard expenses rate system, it is an important variable for whether or not to receive normal evidence in the aspect of tax burden, so transfer dealings of false materials without actual transactions are expected.

⑥ In case of industries of businessmen with low realization rate of the taxation standard, they could reduce their tax burden instead.

⑦ the method of estimation taxation system is very uniformly applied in Korea, while foreign countries estimate incomes through various estimation measures.

The solutions for those problems above are as below.

① To assess the standard expenses rate close to the actual income rate, it is needed to utilize the materials of actual tax affairs investigation positively.

② For fixing up the vagueness of main expenses, it is necessary to expand and apply the range for main expenses from the currently limited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to the supply of all the services and goods.

③ To solve the increase in the expenses for association of tax payment, we should expand and apply the current deduction system of account books keeping-tax amount actively.

④ When businessmen of book keeping do estimation report, it needs inducement by account books-keeping through a strong tax affairs investigation.

⑤ We should reduce the range of the businessmen applied under the current standard expenses rate and simple expenses one.

⑥ It is needed to readjust the rates of some industries and to strengthen more and more the management of the sources of tax of no account books keeping-report businessmen.

Even if whatever good systems are introduced, the tax authorities are tepid to carry out those systems,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expect some achievements from the introduction. A rapid betterment for problems mentioned above could make the introduction of the standard expenses rate system available, moreover, the success of the system will be linked to be basis for the perfect taxation system based on evidence in the long-term aspect.

< 참고문헌 >

- 최명근 : “세법학 총론” 세경사 1995
- 김완석 : “소득세 법론” (주)조세통람사 1997
- 임상엽 : “세법개론” 상경사 2002
- 국세청 : “국세통계연보” 2003
- 국세청 : “표준소득률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
국세청 보도자료 2000.6
- 국세청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안내” 국세청 보도자료 2000.1
- 김중택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 이행녕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김수현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 박찬웅 : “소득세법상의 추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2
- 장상윤 : “개인 사업자의 소득세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 이기성 : “소득세 과세방법에 있어서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혜성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장기용 : “기준경비율제도(안)의 평가와 보완과제 - 표준소득률제도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논집 2001
- 최경식 : “표준소득률제도 폐지와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에 따른 과제”
건양대학교 건양논총 2001
- 정재연, 신현걸 : “기준경비율 결정시 고려할 요소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세무학 연구 제 20권 제2호 2003

- 서희열, 권성수 : “기준율과세제도의 평가와 향후 정책 방향”
강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 논총 2000
- 김윤수 : “기준경비율제도에 관한 전반적 해설”
조세신보사 월간경리 제28권 제5호 통권 327호 2004.5
- 임충래: “기준경비율 제도 개선에 대한 小考”
세무사 신문, 한국세무사회

